# 2025년 연구개발특구육성(R&D) 사업 지원 공고

연구개발특구 내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인공지능(AI)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세계적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5년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5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(재)연구개발특구진홍재단 이사장

### ■ 공고대상 사업

1.	ΑI	글로벌	빅테크	육성사업(정책지원형)	2
2.	ΑI	글로벌	빅테크	육성사업(경쟁형 R&BD)	10

### ■ 신청방법 및 절차

-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(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)
 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it.go.kr)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www.innopolis.or.kr),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
- ㅇ 공고 및 접수기간

사 업 명	공고기간	접수기간
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	`25. 5. 23.(금) ~ `25. 6. 24.(화)	'25. 6. 9.(월) ~ '25. 6. 24.(화), 15:00까지
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  -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
  - ※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. (접수기간 마감 후 온라인 신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단되며, 신청(제출)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처리 불가)
- 접수처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

# 1 시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(정책지원형)

# 1. 사업개요

### □ 추진배경

o 연구개발특구에 집적되어 있는 인공지능 분야 선도 연구기관 연구성과 및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여, 시장 선도 기업 육성 필요

### □ 사업목적

o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대학, 출연(연) 등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, 컨설팅을 지원

#### □ 사업내용

- 산업 동향분석을 통한 차년도 전략 AI 분야 추천, 공공AI기술의 기업 적용, 선정 기업 컨설팅 등 특구 내 AI 혁신기업 육성 지원
  -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산업 동향분석을 통한 차년도 전략 AI 분야 추천, 공공 AI 기술 적용 및 선정기업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

#### [세부 사업내용 관련 예시]

- · (산업동향 분석) 국내·외 AI 산업·기술 동향을 조사·분석하여 향후 유망 AI 분야(예: 의료 영상 AI, 스마트팩토리 AI 등)를 도출하고,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지원 전략을 수립
- · (공공AI기술 적용 컨설팅) 기업 현장 맞춤형 AI 도입을 위해 데이터 라벨링 교육·훈련 등실습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 및 시제품 제작·파일럿 테스트를 지원
- · (선정기관 지원) 과제 선정기관 대상 각 기관의 연구역량과 산업수요를 종합 분석하여 특성에 맞는 AI 분야를 발굴하고 과제 추진방향 멘토링 등 정책지원

# 2. 지원내용

	2025년	예산규모	:	총	625백	l만원
--	-------	------	---	---	------	-----

- □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: 총 사업기간 동안 최대 1,875백만원 이내
  - o 각 연차별 625백만원 이내\*\*
    - \*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    - \*\*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'25년만 확정이며,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
- □ 지원기간 :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<sup>\*</sup>
  - \* '25년(1차년도) 연구기간은 '25.7월~12월(6개월)로 하되, 평가 및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- □ 신청자격 :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
  - 주관연구개발기관 : 공공연구기관, 협회,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AI 도입·내재화 컨설팅 지원 경험이 있는 기관 등

#### 가. 국립연구기관

- 나. 정부출연연구기관(특정연구기관 육성법,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)
- 다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(대통령령)
- 1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(산학협력단 포함)
- \*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
- 2.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
- 3.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- 4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
- 5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·조사·개발·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
- 6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
- 7.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
- 8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- \*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(분원)도 포함
- ①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
- ②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
- ③ 「연구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(연구관리)
- 공동연구개발기관 : 공공연구기관, 협회,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AI 도입·내재화 컨설팅 지원 경험이 있는 기관 등
- ㅇ 컨소시엄 구성 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필수 포함

### □ 지원내용

- 산업 동향분석 및 전략적 특구 지원 방안 수립, 공공 AI기술의 기업 이전 및 적용, 선정기관의 성장 및 특구 내 공공기관 연계를 위한 컨설팅<sup>\*</sup>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
  - \* 단계별 컨설팅 대상 : (1단계) 15개 내외 기업 → (2단계) 8개 내외 기업 → (3단계) 4개 내외 기업 ※ 선정기관 수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- 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: 전액(100%)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지원
  - o 대학, 정부출연기관,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, 직접비의 10% 계상 가능 (현물, 위탁연구개발비, 국제공동연구개발비, 연구개발부담비 제외)

- □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: 해당없음
- 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
-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(만 18세~34세)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
- ※ 신규채용 연구원(청년인력)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2024년 7월 17일~)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 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
- ※ 군 복무 시 복무 기간만큼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군 복무기간은 연월수로 산정하되,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함
-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,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
-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(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,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,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)

#### < 예시 >

-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.25억원의 R&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
-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.25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
-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(V표시)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

사업연도	1차년도		2차년도	
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	2.25억		3.0억	
매 5억원 이상인 시점		V		
채용 사례	1명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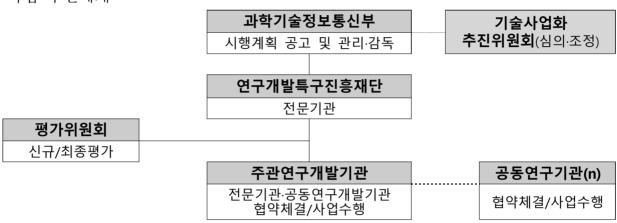
- □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: 연구장비 계상 불가
- □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: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'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' 과제에 해당함
  -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
  - ※ 단,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
  -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,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초과 하게 되는 경우,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
  -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 과제 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, 사후 적발될 경우,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

### < 관련법령 및 규정 >

- •국가연구개발혁신법: 제31조(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),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, 제35조(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),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
- ·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(과기정통부 고시)
- '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(안)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3회 운영위원회 심의, 2024.10.31.)

### 3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□ 사업 추진체계



□ 추진절차



※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선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. (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)

# 4.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

□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항목	비중(%)	
스해기자 여란	• AI 관련 정책 및 AX에 대한 이해도	20	
수행기관 역량 	•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(유관사업 수행경험 등)	30	
ᆂ피괴취이	•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		
추진계획의 타당성	•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	50	
400	•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		
활용가능성 및	•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	20	
파급효과	•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, 경제적, 지역적 파급효과	20	
	계	100	

※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/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### □ 평가방법

-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,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, 토론평가,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-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워칙임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'지원가능과제'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'지원제외'로 분류함
- o '지원 가능 과제'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o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'지원가능과제'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- ※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 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- o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(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)이 1:1 이하의 단독· 미응모의 경우,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
  -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: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,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
- □ 우대사항 : 해당 없음
- □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: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
  - o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  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 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- □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: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###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

■'22년도~'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(국세청(홈텍스)발급) 또는 회계감사보고서

- ※ 단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·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,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, 유동 비율,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 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
- ※ 선정평가 이후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### 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	o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
	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
근거법령	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
	o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
	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	o 국가연구개발 시설.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	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
관련규정	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

# 5. 신청방법 및 절차

- □ 사업공고
 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it.go.kr)
  -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
  - 연구개발특구포털(www.innopolis.or.kr)
  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
- □ 신청방법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  - ㅇ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(세부사업, 내역사업명 등) 후 신청 접수 완료
    - ※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별 첨.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)
- □ 접수기간 : '25. 6. 9.(월) ~ '25. 6. 24.(화), 15:00까지(IRIS 시스템 시간 기준)
- □ 제출서류 :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(PDF, 한글)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

번호	서 류 명	서식	비고
1 (필수)	연구개발계획서	서식 1호	주관연구기관 제출
2 (필수)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서식 2호	모든 기관이 <b>공통</b> 날인하여 제출
3 (필수)	사업자등록증	-	모든 기관 제출
	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※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	서식 3호	모든 기관이 <b>공통</b> 날인하여 제출
	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	-	최근 3개년도('22~'24)(비영리기관 제외)

번호	서 류 명	서식	비고
6 (필수)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최근년도기준, 모든 기관 제출(비영리기관 제외)
7 (필수)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	서식 4호	모든 기관이 <b>공통</b> 날인하여 제출
8	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	서식 5호	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
9	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(실적증명서 등)	서식 6호	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(최근 3개년, 최대 5개 이내)

#### 신청 시 주의사항

-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
-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(신청항목)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 로드를 완료하여 '제출완료'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(과제)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.
- o 전산 등록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
-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 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등록 제출
  - ※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,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
-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,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
- □ 문의처 : 아래 담당부서 중 컨소시엄에 포함된 공공연구기관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문의

특구명	부서명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 (@innopolis.or.kr)
대덕연구개발특구	혁신기업지원실	조민형 연구원	042-865-8973	cmh0324
니국한구제宣국구 	기술창업지원팀	최광욱 선임연구원	042-865-8981	kwchoi
광주연구개발특구	기술사업화팀	이지성 연구원	062-603-5023	easycastle
대구연구개발특구	기술사업화팀	조혜진 연구원	053-592-8354	hjcho
부산연구개발특구	기술사업화팀	김다희 연구원	051-293-4875	dah0824
전북연구개발특구	기술사업화팀	황동건 연구원	063-905-9754	hdgboom
가ᄉᅄᄀᆀ밭ᄀ	강소특구육성1팀	장성혁 연구원	031-400-4835	jsh3940
강소연구개발특구 	강소특구육성2팀	안세희 선임연구원	042-865-7094	shahn

○ 시스템(IRIS) 문의 : 사업조정실 이아현 연구원(042-865-8833/leeh0404@innopolis.or.kr) ※ 시스템 관련 사용방법 및 오류사항 등 문의는 IRIS 콜센터(1877-2041)에 우선문의

# 6. 기타사항

□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(사무실, 휴대전화, 이메일 등)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
 □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 □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
 □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 □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 하여 조정될 수 있음
 □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,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

#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(경쟁형 R&BD)

### 1. 사업개요

### □ 추진배경

o 연구개발특구에 집적되어 있는 인공지능 분야 선도 연구기관 연구성과 및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여, 시장 선도 기업 육성 필요

### □ 사업목적

- o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대학, 출연(연) 등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 으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기업 육성
- □ 예산규모('25년도) : 총 9,375백만원

### □ 사업내용

- 연구개발특구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·출자받아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과 공공 연구기관의 공동 기술사업화(R&BD) 지원
-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머신러닝, 딥러닝, 자연어 처리 등 인공 지능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, 이를 기업이 직접 기술사업화하는 것을 지원
-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인공지능 분야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 스에 적용하고 내재화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,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등

#### □ 지원방식

- 전체 사업은 총 3개 단계로 구성하여 사업을 지원하며, 각 단계별로 경쟁\*을 통해 사업성 및 시장성이 우수한 과제를 선별(단계평가)하여 후속 단계 연계 지원 예정
   \* 후속 단계(1단계 → 2단계, 2단계 → 3단계) 연계 시 각각 50% 이내 과제 선별
- ㅇ 후속 단계별 지원 요건(안)\*
  - ◆ 2단계 : 1단계 완료 과제 중 기술적 우수성, 사업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정성적 평가를 통해 전체 과제 중 50% 이내 지원<sup>\*</sup>
    - \* 시리즈 B 이상 투자 유치, 수요자와 계약 체결 등으로 시장을 통해 사전검증 받은 기업의 경우 우대할 수 있음
  - 3단계 : 2단계 완료 과제 중 시장을 통해 검증(시리즈 B, 시리즈 C 이상 투자 유치 또는 그에 준하는 계약 및 사업화 성과를 창출) 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전체 과제 중 50% 이내 지원
  - \* 상기 후속 단계 지원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세부 내용은 1단계 선정 과제에 별도 안내 예정

# 2. 지원내용

- □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: 과제별 총 사업기간 동안 4,625백만원 내외
  - ㅇ 1단계('25년도) : 사업기간 동안 625백만원 이내
  - ㅇ 2 ~ 3단계 : 단계별 사업기간 동안 각 2.000백만원 내외
  - ※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는 '25년도만 확정되었으며, 평가 및 심의 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- □ 지원 기간 :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
  - o 1단계('25년도) : 협약시작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\*
    - \* '25년 연구기간은 '25.7월~12월(6개월)로 하되, 평가,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  - o 2 ~ 3단계 : 각 단계별 시작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\*
    - \* 2 ~ 3 단계 연구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.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□ 지원내용 : AI 기술 활용 제품/서비스에 대해 검증부터 제품화 후속지원까지 각 컨소시엄이 제시하는 단계별 지원 필요내용 및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지원 예정

#### <지원내용 예시>

- o 1단계 : 공공 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Lab to Market을 위한 기술 및 특화 모델을 개발하고, 기술 검증
- 2단계 : 1단계를 통해 검증된 기업 대상 AI 서비스/제품의 상용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R&BD 지원
- 3단계 : 2단계 개발 후 시장성이 확인된 기업(투자, PoC 계약, 샘플 납품 등) 대상, 후속 고도화 및 추가 마케팅・글로벌 진출 지원
- □ 지원 대상 : 특구 내 기업과 공공 연구기관 컨소시엄
  - 주관연구개발기관 : ①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\*, ②연구소기업
    - \* 해당 기업은 본사, 지사, 기업부설연구소, 공장 등이 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, 사업자등록증.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.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
  - o 공동연구개발기관 : 공공 연구기관\*, 산업기술연구조합, 기업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
    - \* 기술을 이전한 공공 연구기관은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공공 연구기관이어야 하며, 해당 공공 연구기관의 사업 참여 필수
    - 공공 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

- 가. 국립연구기관
- 나. 정부출연연구기관(특정연구기관 육성법,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)
- 다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(대통령령)
- 1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(산학협력단 포함)
- \*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
- 2.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
- 3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- 4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
- 5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·조사·개발·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
- 6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
- 7.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
- 8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- \*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(분원)도 포함
- 중요사항: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(출자)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, 선정 시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(출자) 계약이 체결 완료되어야 함
  - 본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은 이전(출자)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, 선정평가 시 이전(출자) 기술과 과제의 연계성을 평가 할 예정
- 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
  -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

중소기업 <sup>1)</sup>	중견기업 <sup>2)</sup>	공기업 <sup>3</sup> , 지방직영기업·지방 공사·지방공단 <sup>4</sup> , 이 외의 기업	그 외의 경우
연도별 해당기관 국제 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 한 연구개발비의 75% 이하		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 개발비의 50%이하	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 비를 제외한 연구 개발비의 100%이하

- 1) '중소기업'이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2) '중견기업'이란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- 3) '공기업'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
- 4) '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'이란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
- \*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% 이하 지원 가능
-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

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	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	그 외의 경우
연도별 해당 기관	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	10%이상	연도별 해당 기관	피스시 비다
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이상	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	13%이상	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%이상	필요시 부담

-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
  - 비영리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
  -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
  -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·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
- □ 중소·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
  - o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    -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
    - 중소·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,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
  - o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
  - o 지식서비스분야, S/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
- 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
-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(만 18세~34세)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
- ※ 신규채용 연구원(청년인력)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2024년 7월 17일~)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
- ※ 군 복무 시 복무 기간만큼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군 복무기간은 연월수로 산정하되,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함
-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,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 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
-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(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,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,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)

-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.25억원의 R&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
-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.25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
-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(V표시)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

사업연도	1차년도		2차년도	
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	2.25억		3.0억	
매 5억원 이상인 시점		V		
채용 사례	1명			

- □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
  - 최종평가(과제별)에서 우수, 보통,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'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'이 직접 연구 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, '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'으로 '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령' 제39조 및 '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' 제 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
  - o 납부기준 :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(영리기관)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
  - 직접 실시 :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(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)와 기술료 납부요율(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)을 곱한 금액을 납부
  - 제3자 실시 :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 (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)을 곱한 금액을 납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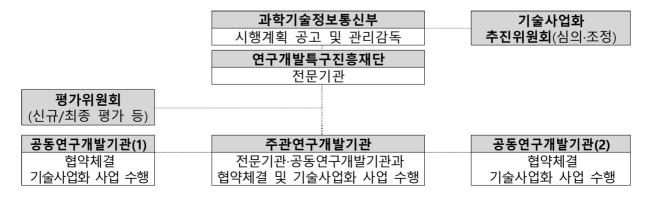
	구분	부과:	기준	요율	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
직접 실시	중소기업 <sup>1)</sup>	~~	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 <sup>4)</sup>	2.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 이하
	중견기업 <sup>2)</sup>	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		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% 이하
	대기업/공기업3)			10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 이하
	중소기업 <sup>1)</sup>			2.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 이하
제3자 실시	중견기업 <sup>2)</sup>	실시계약에 [	따른 징수액	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% 이하
	대기업/공기업3)			10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 이하

- 1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
- 2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
- 3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
- 4) 기술기여도=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/ 총사업비 (단,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)
- ※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,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,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
- ㅇ 납부대상 : 영리기관별 산정(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)

- □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
  -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·장비 도입 시 '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'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
  - ※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(red.zeus.go.kr)에 심의 신청
  -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·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·장비를 도입할 경우,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,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(zeus.go.kr)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
- □ 연구개발성과의 소유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)
  -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
  -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수 있으며,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
    -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
    -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,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(연구개발성과를 사용·양도·대 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 한다. 이하 같다)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
    -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
    - 외국에 소재한 기관·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
  -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
    -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-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-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

### 3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□ 사업 추진체계 (세부 과제 구성은 예시)



### □ 추진절차



※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,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(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)

# 4. 평가항목·방법 및 유의사항

- □ 사전검토(평가 전단계)
  -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: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9조 및 별표2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부실위험 확인 관련	■ '22년도~'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(국세청(홈텍스)발급) 또는 회계
제출증빙서류	감사보고서

※ 선정평가 이후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9조 및 별표2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### □ 평가항목

평가항목	세부항목	비중(%)	
기술역량 및	• 사업 부합성 및 지원 필요성	20	
사업화 필요성	• 사업화 기술의 우수성 및 경쟁력	30	
	•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		
수행기관 역량	• 기술·제품의 사업성 및 시장성	30	
	• 주관기관의 최근 3년 이내 투자 유치 및 사업화 실적		
	•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	30	
사업화계획의	•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		
타당성	•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		
	• 사업화 성과(매출, 수출 등) 달성 가능성		
활용가능성 및	•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·경제적 파급효과		
파급효과	• 고용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	10	
	계	100	

※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### □ 평가방법

-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,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, 토론평가,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-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'지원가능과제', 종합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'지원제외'로 분류함
- o '지원 가능 과제'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o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'지원가능과제'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 ·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- ※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 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- o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(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)이 1:1 이하의 단독· 미응모의 경우,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
  -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: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,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
- □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: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, 총 5점 한도
  - ㅇ 입지 요건 관련 가점 사항(아래 입지 관련 가점 중 최고점 1건만 부여)
    - 연구개발특구 소재 연구소기업(3점)
    - ※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소기업 등록 요건 등에 따라 등록 취소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
    - 연구개발특구 소재 첨단기술기업(3점)
      - ※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
  - o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"우수(혁신 성과): 90점 이상"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(1점)
    - ※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"우수"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
  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(1점)
    - ※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, 관련 증빙 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
  - o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에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」 제 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(1점)
    - ※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

- □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: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
  - o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  - o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 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
### □ 유의사항

- 가.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  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
  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
  - -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  - -「대외무역법」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- 나.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'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' 과제에 해당함
  -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※ 단,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
-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,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,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
-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 과제 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, 사후 적발될 경우,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

### < 관련법령 및 규정 >

- ・국가연구개발혁신법 : 제31조(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),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, 제35조(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),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
- ·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(과기정통부 고시)
- '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(안)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3회 운영위원회 심의, 2024.10.31.)
- 다.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라.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 해지, 기술료 미납 등 기술이전 의무사항 미이행,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(또는 사유 발생시)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- 마.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(사무실, 휴대전화, 이메일 등)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
- 바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근거 법령	o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<sup>*</sup> 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.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관련 규정	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

# 6. 신청방법 및 절차

- □ 사업공고
  -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it.go.kr) o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
  - o 연구개발특구포털(www.innopolis.or.kr)
  -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(www.iris.or.kr)
- □ 신청방법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or.kr)을 통한 신청
  - ※ 본 과제는 IRIS를 통해 접수가 가능한 과제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별첨.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)
- □ 공고기간 : 2025. 5. 23.(금) ~ 2025. 6. 24.(화)
  - 전산접수기간 : 2025. 6. 9.(월) ~ 2025. 6. 24.(화), 15:00까지(시스템 시간 기준)
- □ 제출서류 :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(PDF) 형태로 IRIS에 업로드
  - ㅇ 제출서류 목록

번호	서 류 명	H시		제출대상	파일형식	
근오	시 ㅠ ㅎ	서식	주관	공동	위탁	파트용격
1 (필수)	연구개발계획서	서식 1호	0	-	-	PDF
2 (필수)	사업화 대상기술 우수성 설명자료 ※ 자율서식, 10페이지 이내	-	-	0	-	PDF
3 (필수)	사업자등록증	-	Ο	0	0	PDF
4 (필수)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서식 2호	Ο	0	0	PDF
5 (필수)	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	서식 3호	0	Ο	0	PDF

버승	11 2 13	17 71		제출대싱	피이청시	
	서 류 명	서식	주관	공동	위탁	파일형식
	NTIS 차별성 검토 결과증 ※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	-	0	-	-	
7	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		0	0	0	DDE
(필수)	※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('22~'24)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	-	※ 비영	리기관 제	출 제외	PDF
8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	0	0	0	PDF
(필수)	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※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			PDF
9	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<sup>1)</sup>		0	0	0	200
(필수)	※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 확인서의 유효 기간이 유효해야 함	-	※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			PDF
10 (필수)	기술이전(출자)계약서 또는 의향서 <sup>2)</sup>	서식 4호	0	-	-	PDF
11	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	서식 5호	해당시	해당시	해당시	PDF
12 (필수)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	서식 6호	0	0	0	PDF
13	주관연구기관의 최근 3년 이내 투자유치, 계약체결 및 대외 수상 등 실적	-	해당시	-	-	PDF

- 1) 확인서 발급사이트: 중소기업확인서(http://sminfo.mss.go.kr), 중견기업확인서(https://mme.or.kr)
  - ※ 주의사항 :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
- 2)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기술이전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, 결과통보 후 20일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협약체결 시 기술이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. 다만 추진절차상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제담당자에게 공문으로 회신하여 해당 사유를 알려야하며, 특별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
#### 신청 시 주의사항

### ○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

-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(신청항목)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'제출완료'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(과제)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.
-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
  - ※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,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 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
-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(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)

# □ 문의처

ㅇ 사업 문의 : 아래 담당부서 중 주관연구기관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문의

특구명	부서명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 (@innopolis.or.kr)
   대덕연구개발특구	혁신기업지원실	조민형 연구원	042-865-8973	cmh0324
· 네크한무게르륵푸	기술창업지원팀	최광욱 선임연구원	042-865-8981	kwchoi
광주연구개발특구	기술사업화팀	이지성 연구원	062-603-5023	easycastle
대구연구개발특구	기술사업화팀	조혜진 연구원	053-592-8354	hjcho
부산연구개발특구	기술사업화팀	김다희 연구원	051-293-4875	dah0824
전북연구개발특구	기술사업화팀	황동건 연구원	063-905-9754	hdgboom
ᆉᄉᅄᄀᆀᄡᇀᄀ	강소특구육성1팀	장성혁 연구원	031-400-4835	jsh3940
강소연구개발특구	강소특구육성2팀	안세희 선임연구원	042-865-7094	shahn

○ 시스템(IRIS) 문의 : 사업조정실 이아현 연구원(042-865-8833/leeh0404@innopolis.or.kr)

※ 시스템 관련 사용방법 및 오류사항 등 문의는 IRIS 콜센터(1877-2041)에 우선문의

# 7. 기타사항

신정서 및 구비서듀의 미비한 사항에 대한 수성 및 보완요정에 응하여야 함
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이
따르며, 지침ㆍ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
신청한 기관에게 있음

□ 사업비	및	사업기간	등은	평가결과에	따라	조정될	수	있음
-------	---	------	----	-------	----	-----	---	----

사업선정	시	주요	성과지	표, 서	부예산	및	사업계획	관련	세부내용	등은	연구개기	칼
특구진흥	재딘	과 협	의하여	조정목	될 수 있	음						